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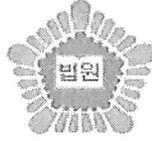
사 건 2023노668 강제추행
 피 고 인 이순국 [REDACTED]
 [REDACTED]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태훈(기소), 이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고단275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4쪽 1 내지 3행의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비켜달라는 의미와 격려의 의미를 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파프리카 선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해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



건 범행은 2021. 8. 9. ~ 10.경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2021. 8.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점, 피해자는 위 해고가 해고의 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2021. 10. 1. 복직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그후 2021. 10. 9. 피해자에 대하여 구두로 휴직 명령을 한 점, 피해자는 2021. 11. 22. 위 휴직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다시 하였고, 2021. 12. 2.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12. 7. 피해자에 대한 해고의 예고통지를 한 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3. 이 사건 사업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휴직 명령은 부당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초부터 부당한 권리 구제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위 휴직 명령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구제신청을 할 무렵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고소를 통해 공적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치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1회에 그친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1 내지 3행의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균 _____

 판사 정명진 _____

 판사 김병인 _____





등본입니다.

2024. 5. 21.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정진욱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